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 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3장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“압류통지서” 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20일

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

1. 공고사유 : “국유재산 사용료 압류통지서”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2. 관련법규
 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
 - 나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 - 다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3. 공고기간 : 2017. 6. 21. ~ 2017. 7. 5. (15일)
4.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

성 명	주 소	압류일자	압류재산	체납액(원)	반송사유
김효*	전남 광양읍 대림오성로 ***	2017년 6월 8일	체납자 소유 토지	410,930	폐문부재
신예*	전남 광양시 매천로 ***	2017년 6월 8일	체납자 소유 토지	197,100	수취거절
정정*	전남 광양시 매천로 ***	2017년 6월 8일	체납자 소유 토지	217,140	수취거절
하동*	전남 광양시 매천로 ***	2017년 6월 8일	체납자 소유 토지	233,850	수취거절

5. 공고내용 :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.
 - 가.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 - 나.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.
 - 다.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【Tel. 062-600-4759】 로 연락 바랍니다.